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03조의23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) ①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	<p>제103조의23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4개월(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) -----. 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